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14910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149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나1074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A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BA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C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BB)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20. 선고 99나10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시

가. 원심 인정의 기초사실

- (1) 소외 주식회사 샘E(대표이사 소외 조DA, 1997. 3. 10. 주식회사 정E으로 상호변경,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4.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30,000,000원, 보증기한 1998. 4.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2) 소외 회사는 1996. 4. 19.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8.5%, 변제기(대출기한)는 그 신용보증기한보다 1년 짧은 1997. 4. 19.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7. 4. 16. 원고에게 변제기 연장 신청을 하여 1997. 4. 19. 변제기를 그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기한인 1998. 4. 9.까지로 연장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변제기를 위와 같이 연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여 1997. 9. 15.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7. 9. 18.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 (4) 한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된 피고명의로의 신용보증서 이면 신용보증약관 및 그의 부록 규정 중 신용보증조건 및 그의 변경과 관련된 규정(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신용보증기한)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 보증기한과 보증부대출기한과의 관계

보증부대출의 기한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한 내이어야 하고(제1항),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기금이 따로 신용보증서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된 것으로 본다(제2항).

㉡ 제4조 - 신용보증조건변경

채권자는 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제1항), 신용보증조건의 변경은 기금이 채권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며(제2항), 기금은 제2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제3항).

(다) 제16조 - 면책사항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호).

(라) 제17조 - 면책범위

기금의 면책범위는 기금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

(마) 면책기준 - 부록1 (9) 면책기준 (가) 대출보증약관(개별보증) 면책기준 1-1. 나.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장기인 경우로서 보증기한 경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대출금 전액 및 동 종속채무가 면책된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의 신용보증기한은 비록 그 신용보증서에는 보증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대출기한인 1년으로 단축되고, 단축된 신용보증기한이 만료된 후 원고가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피고에게 서면으로 신용보증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1년이라고 할 것인데, 신용보증사고가 1년의 신용보증기한인 1997. 4. 19.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상고이유의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신용보증기한을 2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직원 소외 김DB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서면으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않아도 신용보증기한이 연장된다고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김DB이 보증료를 추가로 수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신용보증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위의 약관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은 모두 그의 의미가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약관조항들의 의미가 불명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피고가 대출보증원장에 보증기한을 1998. 4. 9.에서 1997. 4. 9.로 변경 기재하지 않고 추가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기간 경과 직후 보증해지절차를 밟지 않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함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원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인 피고의 보증실무가이드상의 보증해지절차는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이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흠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한 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4점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 소외 김DB이 보증기한이 1998. 4. 9.까지인 것으로 착각하여 1년분의 추가보증료 300,000원을 수납하였고, 가령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조DA가 보증료 1년분만 더 납부하니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고 원고에게 말하자 원고가 대출기한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약정내용이 된 위 약관 제4조 제1, 2, 3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의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김DB이 1년분의 추가보증료 300,000원을 수납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